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9구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기타(정보공개)
원 고	□□□ 외 2명	피 고	인천광역시◇◇교육지원청교육장
판결선고일	[1심]2020. 1. 30. 원고패소	비 고	
사건개요	❍ 피고는 2018. 3. 11. ○○○로부터 인천◇◇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[정기감사 및 특별감사]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받았고, 피고는 2018. 3. 20. 3년간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, 수사재판중인 유치원은 감사결과가 없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치원 및 원장 실명은 비공개하는 결정을 함. ❍ ○○○는 2018. 5. 31.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(사건번호: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○○○○○호) 피고가 패소하여 2019. 4. 24.에 확정됨. ❍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2019. 4. 29. 관내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및 원장명 부분의 공개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유치원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하였고, 2019. 5. 15. 감사결과 적발된 유치원명 및 원장명에 대하여 2019. 6. 17.자로 공개하는 정보공개 결정을 함. ❍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며,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		
판결이유	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-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하여 원고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,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공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이익보다 더 우월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'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'에 해당한다. ❍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-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,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,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,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,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,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		

	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.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김○○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나 원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김○○의 이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결 론	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